

李朝後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階層

崔 虎 鎮

第一章 國家 및 官僚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는 무릇 누가 高利貸의 役割을 하였을것인가. 結論的으로 말하면 右職이 官吏 즉 官人階級 및 一旦 官職을 辭退한 所謂 土豪 즉 地方封建地主群이 그들의 封建的財產을 高利貸付資本으로서 機能시키았다. 그러면 그들은 大體 어떠한 形態에 있어서 機能시켰는가. 그것에 앞서 그들은 在官中 어떻게 하여 高利貸付資本을 調達하였는가를 考察하여보자 먼저 丁茶山으로 하여금 論述시켜 보자.

『試論稅米一事，該納戶曹者四千石，則本邑之徵於民者，遠過萬石，出於民書四則。其沃田饒戶稻米流脂，朝令而夕輸之者，吏皆作姦，或以隱結收之，或以官結除之，或以邸價收之，或以僞災除之，或以錢受之，或以米受之，已自初秋雲委川輸，以了偷取之額，悉歸私囊，於是聚其殘米，以充四千石，王稅之額，凡充於王稅者，皆闔家沒死，流亡絕戶，螺寡孤獨，疲骨殘疾，陳田廢畠，蒿萊磽確，剝膚袒髓，無可奈何之類耳』(註)

(註) 「牧民心書」卷之六 貢納

이와 같이 在官中 官吏가 가지는 特權을 濫用하여 最大限度로 人民을 收奪하고 급어 봉은 封建財產은 大土地所有者로서 高利貸付資本家로서 活動하는데 가장 適切하였던 것은 누구나 否定할수 없을 것이다.

다음에 우리들은 이러한 者의 高利貸資本家로서의 活躍相을 보자.

『韓國의 農業者は 主로 細民으로서 大地主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大概 官吏의 狀態에 있는 者로서 그大部分은 적지 않은 支拂을 받고서 耕地를 細民에게 貸與하고 또 때로는 收穫의 切半을 收得할 約束으로써 種子를 貸與하는 수가 있다』(註)

(註) 「韓國誌」4面

李朝末期에 日本의 어느 論者는 다음과 같이 人民과 官僚와의 關係를 陳述하고 있다.

『官吏收歛의 結果 이것은 이미 世上에 알려져 있는 事實로 人民은 政府에 對하여 無條件의 小作人 그리고 官吏는 大地主라고도 할 關係로 되어 있다. 勿論 制度上으로는 嚴한 稅法이 있어서 今日도 그대로 行하여 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좀체로는 그대로 行하여지지 않을 뿐더러 마치 無法無制인 모양으로 가진것 만큼은 收取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確實한 法으로 되어 있는것이다』(註)

(註) 末永純一郎「朝鮮の現制並 日本との關係」(東邦協會編纂「朝鮮彙報」明治 26年 125面)

李朝末期에는 土地는 이미 小數者에게 集併되고 零細農이 擴大되어 가고 있었다. 官吏인 地位에 있는 者는 마치 形影이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이 恒常 財產 즉 土地가 그들에게 附隨하여 갔다. 그러므로 大土地所有者로서 自己가 所有하는 土地生産物을 資本으로 하여 農村에 있어서 直接 現物貸付를 하는 것이었다. 貨幣貸付보다는 現物貸付가 훨씬 苛酷性을 띤 高利貸資本形態인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秋收의 切半을 目標로하여 種子를 貸付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高利貸의 憎惡할 點이 伏在하고 있는것이다.

다음에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中央政府의 一種의 高利貸付資本으로重大한 몫을 는 倉米制를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制度는 거의 東洋的封建制度下에 있어서의 社會保障의 象徵인데 이 本質이 훨씬 顯著하게 나타난 것은 아마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일일것이다. 이 制度는『社還米』『還上米制度』라고 하여『社倉』『官倉』『義倉』『常米倉』等 一定한 倉庫를 設置하여 그곳에 官穀을 貯蓄한 後 所謂 罷餉方法으로 反覆되는 飢饉 餉임 없는 爭亂時에 貧民에게 『賑貸』或은 『振貸』하여 가을의 收穫期에 一定한 利息을 加算시켜 還收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그 自身 農民에 對한 一種의 高利貸이었던 것은勿論이다. 다음의 諸資料로서 그 本質을 吟味하여 보자.

『韓國誌』에는 『穀倉』이라는 題目아래

『韓國에 있어서 처음으로 穀倉을 設立한 것은 一六世紀의 末에 이르러서 日本人을 退據한 後 곧 軍隊給養을 위하여 各種의 穀物貯蓄에 竝手하여 各鄉에 穀倉一個式을 設置하고 地方官吏가 이것을 管掌하였다. 그리하여 그 穀物은 保存의 時期가 長期에 걸쳐 腐敗의 念慮가 있으므로 이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春季에 그 半量을 農民에게 貸與하고 秋季에 이르러一定한 利息을 (通例 一割)을 添付하여 返還하는 規則을 設定하였다』(註)

(註) 「韓國誌」 329—330面

고. 一旦 緊急한 境遇에 使用할 食糧으로 各地方에 穀倉을 設置하여 各地方官으로 하여금 管理시킨 것인데 不時의 事件이 發生하지 않을 境遇에는 腐敗의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이 腐敗를 防止하고 더우기 窮乏한 春窮에 우는 農民層에게 貸付함으로써 國家의 體面을 維持하고 그리하여 一石二鳥의 意圖에서 恒常 이것이 貸付資本으로 變한 것이다.勿論 利子를 包含하여 還收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操作이 시작 된 것은 이미 오랜 高麗封建社會까지 遷及할 수 있는데 李朝初葉의 資料를 먼저 보기로하자.

우선 李朝官府는 「戶給屯田之法」을 考案하였던 것이다.

『戶曹請戶給屯田之種啓曰今考京外雜穀會計之數京中則二十五萬二千六百九十四石外方則一百二十二萬九千一百六十三石然凶荒之貸軍旅之事古今所慮上項積所誠難備急乞以外方民戶第其大中小戶戶給屯田種子大戶三斗所出十五斗中戶二斗所出十小戶一斗所出五斗殘戶二三並給一斗所出五斗勿論雜穀待秋收斂……從之』(註)

(註) 「太宗實錄」卷17. 9年 己丑 正月

戶曹 請啓한 바에 依하면 凶荒 軍旅等 應急한 費用에 對備하기 위하여 屯田의 種穀이란 名目으로 農家에 陳穀을 貸付하여 秋成後 五倍의 新穀을 收斂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戶給屯田之法』은 本質로는 國家에 依한 掠奪行爲인 것이明白하다. 또

『議政府請各司方奴婢及革去寺壯奴婢皆給屯田之種啓曰除六十已上五以下外壯奴給種租十斗壯婢八斗至租成每一斗收十斗從之時以給種號爲屯田實非有

公田也』(註)

(註) 「太宗實錄」卷第17. 9年 己丑 正月

즉 「戶給屯田之種」은 一般農民에게 對하여 施行되었을 뿐만 아니라 各司에 屬하는 外方奴婢와 革去, 寺壯 奴婢에게도 適用되어 每一斗에 十斗式을 収取한 것이니 高利라 아니 할수 없다.

『御經筵諸訖領事洪應啓曰京畿諸邑還上十碩未收者命罷守令督徵甚意率皆破產以償民甚苦之請緩具令』(註)

(註) 「成宗實錄」卷 211. 19年 戊申 正月

成宗朝에 이르러서는 還上未收十碩이면 其邑 守令을 罷免하는 命令이나 린것이니 封建官僚의 農民에 對한 督納은 形言을 絶하는바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第十八世紀에 이르러서는 全혀 그 本來의 趣旨를 没却하여 完全히 高利貸付資本化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資料가 事實을 밝혀준다.

『京畿御史李基德咸鏡道御史徐命膺復命命膺以申戌冬承命至是還朝 上召見命讀書啓至無依錢條 上曰無依者何謂也命膺曰鄭益河按道時以交濟倉錢分依民間殖利取用歲久民窮轉至難捱即今未歛俱是無依者故名以無依矣 上惻然良久曰北民若因此不能保豫以何顏見豐壤舊址乎即蕩滅』(註)

(註) 「英宗實錄」卷83. 12浪表. 英宗 31年 2月 丁巳

英祖朝 즉 第十八世紀의 中葉에는 咸鏡道만으로도 春窮時に 『社倉』에서 貸付된 元利를 가을에 還納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債鬼의 無慈悲한 催促에 堪耐하지 못하여 妻子를 賣却하여 辨將를 하든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借債者本人이 깨끗히 緊死하는 慘狀이었다. 이事情을 御史 徐命膺이 咸鏡道에서 上京하여서 奏上한 것이다. 여기서 『社倉制度』가 무릇 如何한 性格을 가지는 것인가 納得할 수 있을 것이다. 丁茶山(若謹)은 第十九世紀初葉에 『社還米制度』의 商業資本=高利貸付資本化的 狀況을 다음과 같이 極히 詳細하게 描寫하고 있다.

『國初，因循不改，其法始倣社倉，漸作官倉，於今遂以爲還上也。原初設法之本意，半爲民食，半爲國用，豈必爲虐民厲民而設之哉，令也弊上生弊，

亂上添亂，雲渝霧洩，沙滾波湧，爲天下不可究詰之物上之所用，以補經費者十之一，諸衙門所管，以自爲廩者，十之二，郡縣小吏，翻弄販賣，以自作其商賈之利者，十之七，一粒之穀，民未嘗微見其末，而白輸米若粟，歲以千萬此是賦歛，豈可曰振貸乎，此是勒奪，豈可曰賦歛乎，牧於少日，或習詩賦，或習弓矢，項羽沛公之句，擊扇以自豪，馬弔江牌之戲，賭錢以自娛，上焉者太極元會之理，河圖洛書之數，理氣之訟，性情之辨，以爲極天下之高妙，而田制賦法，倉廩之數，即一字半句，未嘗講習，一朝舉而坐之於神奸鬼猾之上曰沙察其奸，天下其有是乎，今搢紳大夫，論還上之弊者，不過曰秋納精而濫春頒粗而陷，於民甚冤也，其論吏逋者，認之爲吏夜開庫門，負苦而翰之家而已，故守令徵行覘倉者多嗟呼不亦遠矣，八路之中，南吏尤詐，歷世以來，今日極甚，孰知其若是之兇惡乎，一粒之粟本無頒生，而年年白納，一戶十苦，嗟呼民雖欲小須臾無死，其可得乎，若夫古今法制之得失，並詳倉廩之制，令並略之』(註)

(註) 「牧民心書」卷13 簿

즉 이것으로써 『社倉米』가 本來의 使命을 다한것은, 겨우 十中二이고 殘餘의 十中八은 地方官吏의 商業資本으로서 그리고 高利貸資本으로서 機能한것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振貸』라고 할수 있을가. 全혀 『勒奪』이고 『賦歛』이라고充分히 말할 수 있을것이다. 丁若鏞은 또 이곳에서도 『嗟呼民雖欲小須臾無死其可乎』라고 慨歎하여 마지 아니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李朝末期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社還米制度』에 對하여 政府도 默視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혼히 그들의 日常生活의 根抵를 動搖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의 二箇의 報告로써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려나 몇해가 經過함에 따라서 行政上의 不正手段에 依하여 貯蓄한 穀物은 漸次로 減少하고 심지어는 穀倉은 단지 帳簿上에 있어서의 名義만 으로 되었다. 이 事情은 1894年 江原道長官으로부터 中央政府에 報告되고 그 報告는 同年 11月 12日 官報에 揭載되고, 이것때문에 議政府는 二箇의 法律을 發布하여 根本的으로 穀物給與法을 改正하고 地方官吏의 管掌을

廢止하여 이것을 自治團의 管理에 옮기고……云云』(註)

(註) 「韓國誌」329—330面

『鄉에서는 鄉費로 各一箇式이 倉庫를 設立하고 하나는 凶作에 對備하고 하나는 洪水, 暴風, 時疫等의 不幸에 對備하고 이러한 境遇에 貸與한 것은 一時에 或은 若干年間에 返還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또 이것과 關係없이 住民은 그 해의 秋季에 返還하는 約束에 따라서 春季에 이 倉庫로부터 種子를 借用할 수 있는 規定이다』(註)

(註) 「同上」330面

즉 名義上의 『社倉制度』를 어떻게 回復시키느냐 이것이 對한 應答으로는 從來의 地方官의 管掌으로부터 離脫하여 地方自治團 所謂『鄉』으로 하여금 倉庫를 設立시키어 不時에 對備하려 하였는데 元來 그러한 穩健的對策은 紙上의 空論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分明할 것이다.

如何든지 『社倉』制度도 다른 高利貸機關과 더불어 그 重要的 構成分子로서 李朝封建社會의 經濟的 政治的 衰微를 빠르게 하는데 効果있었던 것만은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李朝末期에는 外國의 居留民 特히 日本人의 居留하는 者가 漸次로 增加하고 그에 따라서 이 땅에 새로이 從來의 副次的 收取關係를 專業으로하여 役割을 할 『典當舖』——所謂 近代的 貸金業이라는 高利貸가 輸入된 것인데 그것에 對하여는 다음과 같은 報告에 接한다.

『日本居留民이 十名쯤 있는 곳에는 반드시 貸金業日本人이 二, 三名 있었던 것이다. 官吏로서 숨어서 日本商人에게 金錢을 貸付하여 利殖하고 있는 者도 있었다』(註)

(註) 藤村徳一「居留民之昔物語」昭和 2年. 200面

즉 神聖하여야 할 爲政者로서 이 땅에 存在할 官吏가 境遇에 따라서는 自國人을 排除하고, 外國人에게 高利貸付資本을 貸付한 것이다. 그들은 貸金業을 通하여서 高利貸金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國家의 財政의 不足된 部分을 恒常 補填하기 위하여서는 國家自身이 高利貸付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의 그 相對便是 當時 商業資

本을 代表하는『客主』業이었다. 商業資本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封建國家는 商業利潤에서의 収取部分 즉 上納金의 報酬로서 그에게 질거이 商業資本——高利貸付資本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즉『兩班』들은 農民에서 収取한 生產物中에서 餘分이 있으면, 이것을 資本으로하여서 副次的 収取에 着手하였다. 商業資本家를 通하는 境遇의 消息을 훨씬 詳細하게 報告하는 것에 다음의 資料가 있다.

『商人의 營業資本은 한모양으로 律할수 없다고 할지라도……客主는 地方의 兩班에게 融通을 求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資本家가 資本金을 提供함에 있어서는 純然한 貸金業과 같이 利息契約에 依하는 수도 있고, 或은 匿名組合과 같이 利益配當契約으로써 하는 수도 있다. 貸借는 利息에 있어서 높고 年 三割乃至 四割을 普通으로 하고 配當契約에 依한 境遇에는 年 一割乃至 一割五分를 通常으로 하는 ……』(註)

(註) 西尾要太郎「鮮南發達史」大正 2年. 393面

在職의 官吏 또는 그 職을 辭退하고 地方封建 地主群으로 落着되어 高利貸를 營爲한者 以外의 모든 其他의 大土地所有者가 活動한 것을 한마디 하려 한다. 在官者 및 退官者가 비록 李朝封建社會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에의 參加가 如何히 重大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決코 이 社會의 唯一한 高利貸付資本家의 要素를 形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大土地所有者中에는 富裕한 商人이 있었던 것을 指摘하여도 좋을 것이다.

要컨대 國家機關과 官僚——在職者, 退職한 兩班層이라고 불리우는 地方封建貴族群——및 富商의 大土地所有者가 첫째로는 大土地所有者로서 둘째로는 貸金業을 通하여서 第三으로는 商業資本家『客主』를 通하여서 즉 以上의 세가지의 形態를 가지고 高利貸를 行하였다.

第二章 商 人

商人으로 高利貸付를 하는者가 第二의 群을 形成하고 있었다. 大土地所有者는 오로지 그들의 土地所有의 增大量 目的으로 하여, 貸金業에의 融通者는 利子를 目的으로하고 있는데, 이 商人層에 있어서는 獨立小生產者

의 奴隸化 및 價格壓迫으로 말미암아 商業利潤을 높이려는 意圖가 優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商業者의 營業資本은 한 모양으로 律할수 없다고 할지라도 大概 小賣商은 이것을 客主에 依支하고……貸付는 利息에 있어서 높고 年 三割乃至 四割을 普通으로하고 ……』(註)

(註) 「鮮南發達史」393面

이 땅의 商業資本家를 代表하는『客主』는 三割乃至 四割의 高利로 小賣商 그리고 이름뿐인 商人이었던 者에게 貸付를 한 것이다. 特히 特殊한 商業組織을 가진 開城의 商人에 있어서는

『開城에 있어서는 古來로 有力한 資本主가 많고 換錢居間의 仲介에 依하여 또는 差人을 通하여 金融을 하고 殖利를 企圖하고 있다』(註)

(註) 「朝鮮人の商業」28面

이와 같이 蓄積한 資本으로『換錢居間』『差人』이라는 仲介者에 依하여 大規模의 高利貸를 하였다. 이 商人이 高利貸付業者에 出入하는 것은 社會進展에 따라서 더욱 더욱 그 度를 加한 것 같다. 例친대

『全鮮에 金融機關이 不備하여 金利가 높았으므로 商人이 商業을 걷어치우고 貸金業者나 客主로 되는 者가 많이 나타났다』(註)

(註) 「居留民之昂物語」197面

즉 商人으로 活動한 者는 어느程度 商業利潤을 蓄積하면 그것을 中止하고 一層 利潤이 많은 高利貸付業者에 轉業한 것이다. 이곳에 商人資本—高利貸付資本의 姉妹關係를 實證시킨다. 『客主』는前述한 바와 같이 封建地主群에서 資金을 獲得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去來處에서 去來上發生하는 金融關係로서 또 高利貸를 하는것이 可能하였다. 그것은

『華客으로부터 信託을 받은 貨物을 賣却한 境遇에 華客이 資金의 必要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客主가 이것을 받아 他方面에 融通하여 利殖의 길을 購究하고 또 頂金主에 對하여 相當한 利子를 支拂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 利子는 低利로 開城等地에서는 一箇月 一分二厘五毛라고 한다』

(註)

(註) 「朝鮮舊時の金融財政慣行」300面

즉預金主에 對하여서는 될수있는 限의 低率의 利子를 支拂하면서 一便 스스로는 高利率의 貸付를 한『客主』의 高利貸로서의 全貌는 明確히 看取된다. 金融機關이 未發達한 社會에 있어서는 商業資本과 貨幣去來資本이 混融되어 있는 商家가 同時に 銀行이기도 하였고 또 그 反對이기도 하였다.

우리들이 가장 注意하여야 할것은 商人이 小農的 生產者가 生產한 收穫物에 對한 貸付이다. — 그것은 商人の 高利貸付業者로서의 真義를 集中的으로 表現하고 있는데 이것은 商人資本特有의 形態이다. 負債農民에게 發生하는 最初의 義務는 收穫中에 그의 債權者에게 利益있는 部分을 그에게 賣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때 그는 收穫生產物의 代價를 普通市場價格以下로 定하는 것이다. 例친대 다음의 調査報告는 李朝末葉의 商人資本의 活躍의 狀況을 報告하고 있어서 充分히 그사이의 消息을 瞰知할 수 있을 것이다.

『客主』가 農家에 對하여 미리 資金을 貸與하고 가을 收穫時에 그 生產物을 徵收하는 것. 例친대 『釜山方面에 있어서는 陰曆 7月青田(未收穫의 農產物의 뜻)에 貸付하고 가을에 이르러 相當한 米穀을 徵收하여는 新穀時勢에 比하여 約二十錢 廉價할수 있다고 한다. 木浦에 있어서의 綿花의 買收와 같이 또 이 方法에 依하는 것이 많다. 이 方法은 各地에서 이루어지고 그 資本은 韓人客主가 直接 支出하는 것이 적고 거의 日本人의 依託에 依存하며 오늘날에는 日本人이 直接 貸付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方法은 一部落全體에 貸付하는 수도 있고 或은 個人에게 貸付하는 수도 있다 할지라도 面長 洞長들의 保證을 받는 수가 많다. 部落 全體에 있어서 할 때에는 安全하다고 한다』(註)

(註)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慶尙道。全羅道篇) 437面

거의 全部의 農民은 李朝末期에 特히 外國인이 건너오게 되고 따라서 外國貿易이 旺盛하게 됨에 따라서 唯一의 商品인 農產物을 生產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데, 이 땅의 東洋的 停滯性은 더욱 더욱 生產力의 增進을

阻止하고 農民의 經濟力은 나날이 그들의 生活을 威脅하고 그들은 救濟의 길을 將來의 收穫物의 買占人으로부터 金錢을 借用하는 것에서 求하였다. 農民은 이 가을의 收穫物의 代價로서 市場價格보다는 적은 것을 甘受하였 다. 그것도 商業資本家는 韓人보다는 外來者가 全部를 차지 하였다고한 다. 外國資本의 勢力은 이미 이곳에 까지 達하였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 다. 더욱이 收穫에의 貸付方法은 흔로 個々人에 對하여서 뿐만 아니라 部落全體 즉 集團貸付도 하였다고 한다. 商人에 依한 高利貸付는 部落全體를 한 무끔으로 하여 그 勢力의 範圍에 넣지않고서는 滿足하지 않았다. 個々人보다는 全體가 輝신 收取에 安全하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釜山 木浦뿐만 아니라 이 땅의 豊庫라고도 하고 日本과 距離가 가까운 地理的 으로 좋은 環境에 있던 南韓의 各地는 高利貸의 跡扈를 輝신 크게 하였 다. 지금 그 高利의 一例를 들어 보면

『食糧이 缺乏할 때에는 餘裕있는 農家 또는 商人에게서 이것을 빌려서 收穫後 新穀으로써返還한다. 全南務安郡南倉에서 貸付額 一斗에 對하여 1年 5가을返却하고 木浦에서는 1俵에 對하여서 2俵로써 하는 習慣이라고 한다』(註)

(註) 「同上」437面—442面

五割乃至十割 이것은 分明히 一季節보다 짧은 期間에 對하여 다시 말하면 半年보다는 짧은 期間에 對하여 百퍼센트의 利息을 받을 計定이었다. 商人——高利貸는 이와 같은 結合된 形中에 依하여 高利貸의 利子와 普通의 商業利潤 以外에 또 그위에 價格壓迫에 依하여서 可能하게 되어진 超過利潤을 收取하는 것이었다. 反面 小農의 生產者の 零落은 그만큼 度를 빨리 하는 것이었다.

第三章 貸金業과 典當業 註

지금까지는 專業은 아니고 副業으로서의 高利貸付業을 分析하였는데 이 第三群에 屬하는 것은 純全한 專業의 高利貸付資本家로서, 이들은 支配層의 所屬人과도 前述한 商人과도 區別하여 생각되는 것이다. 前記의 것인

前資本主義的 高利貸의 것에 對하여서 이것은 近代의 黎明期와 더부려 專業으로 純粹히 高利貸付業者로서 그 目的을 高利貸利子의 獲得에 集中되어 發生한 것으로 우리들은 李朝末期 外國資本의 浸潤으로 말미암아 招來된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韓國末期에 있어서는 日本과의 通商貿易이 漸次로 活潑하게 되고 따라서 外來의 資本은 이 땅의 米穀商品의 買賣에 專心하였는데 그들과 同時に 外國으로부터의 移住者增加 그것이 나가서 高利貸資本家로서의 地盤을 쌓고 그들의 舞臺를 展開시켰다. 이 땅에 있어서의 貸金業・典當業의 發生・發展過程은 外國資本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일찌기 어느 日本人이 『우리가 內地를 旅行한 前例는 官吏의 遊歷에 있고 이것은 商民의 借金催促・米穀의 買出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陳述한 것은 이 사이의 事實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註) 「典當」이란 文字가 韓國史上 처음으로 보인 것은 「高麗史」第79卷, 食貨編, 借貸條에 『辛酉元年 2月………洪武 8年 2月 13日 以前典當子女無倫久近並許放置』라고 記錄되어 있다

韓國의 最初의 開港場은 釜山에 시작하는데 때는 바로 西紀 1876年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元山, 仁川等의 開港이었고 清日戰爭前後에 이르러 木浦를 비롯하여 馬山港에 이르기까지 數箇所의 開港를 보고 그 結果 交通의 便宜가 크게 열리고 日本人의 入韓者가 增加하고 商業과 더부려 하는 所謂 兼業者인 典當舖와 貸金業이 加速度로 增加되었다. 이것이 露日戰爭에 이르러서는 最後의 清津・雄基港을 열고 각地方 日本人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程度로 居留民이 增加하고 그것과 더불어 貸金業兼業이 漸次로 減少하고 專業인 高利貸——典當舖와 貸金業이 漸次로 頭角을 나타내 왔다. 이것과 同時に 韓國人도 日本人典當舖를 模倣하여 從來의 다른 業과 分離되지 않은 『典當業』 즉 典當舖兼業者는 減少하고, 그것 代身에 專業의 『典當業』者が 發生한 것이다.

外來者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미리부터 高利貸業者로 活躍하였을 것인가. 「韓半島」의 著者 信夫淳平은 當時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金利의 高騰한 것도 이와 같기 때문에 本邦商人도 조금이라도 資

金의 餘裕가 있는 者는 普通의 商業을 한다든지 或은 新事業을 經營하는 것보다도 典當貸金業을 시작함으로써 利益이 比較的 많으며 또 他를 돌아 볼 念慮가 없는것 같다. 따라서 本邦 商人의 多數가 서로 다투어 그 脣獎을 糜하는 것은 堂々한 韓日貿易의 振興策이 아니고 要친대 區々한 典當業・貸金業에 있다』(註)

(註) 信夫淳平「韓半島」明治 36年 50面

「朝鮮人の商業」87面

經濟的으로 廢衰하고 政治的으로 腐敗하여 가는 韓國末期의 社會狀態下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高利貸本家로서 立身하는 以外에 方法은 없었을 것이다. 資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貧弱한 商業資本家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욱 더욱 繁榮하여 가는 高利貸의 사이에 끼어서 處世하는 것이 가장 賢明하고 또 合理的手段이 있을 것이다.

李朝末期에 이름에 따라서 副業으로 아직 兼業의 域을 離脫하지 않은 高利貸付業者가 外國資本의 影響을 받아 傳統的型을 떠나서 專業으로서의 『典當業』貸金業에 옮겨 갔는데, 그러면 『典當業』과 貸金業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었던가. 우리들이 使用할 수 있는 資料는 모두 『典當業은 專業으로 하는 것은 甚히 稀少하여,大概是 貸金業者가 副業으로 이것을 하는데 不過한 것이다』라고 報告하고 있다. 이곳에 二, 三의 資料를 들어 보자.

『典當業者는 日韓人兩者를 論하지 않고 一便 또는 貸金業을 兼營하는 者가 甚히 많고』(註1)

『또 그것(典當業)을 하는 者라 할지라도 이것을 專業으로 하는 것은 甚히 稀少하여大概是 貸金業者가 그 副業으로 質貸를 하는데 不過한 것이다』(註2)

『大概 貸金業者가 兼營하는 것으로서 純然한 典當業者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貸金業者の 數에 比하여 그 數가 훨씬 적고 ……』(註3)

(註 1) 「經濟大辭書」1834面

(註 2) 山口 精「朝鮮產業誌」中卷. 579面

(註 3) 「朝鮮商品と地理」商品論 7面

一般的으로 典當鋪의 對象인 것은 動產인데, 李朝末期에 있어서는 生產力의 未發達로 因하여 商品의 種類가 적고 따라서 이 땅의 貸金業者로 하여금 典當業者보다도 優位에 서게 하였던 것이다. 이 社會의 土地經濟의 停滯性은 『借金的自給自足』(註1) 을 놓고 그 進展은 不動產을 高利貸付業에 提供하는 唯一의 財產으로 하였다. 擔保物이 있은 後에 典當鋪이고 그 對象 없는 곳에 『典當業』이 繁榮하지 않는 것은 當然하다. 거의 모든 高利貸는 土地·家屋을 擔保로 받는 貸金業者이었다.勿論 商品經濟化 貨幣經濟化가 進展함에 따라서 純粹한 動產을 典當物로 하는 典當鋪가 跃層하는것인데, 如何튼지 高利貸付業으로서의 專業은 貸金業이 典當鋪業보다 훨씬 그 初有에 있어서는 頭角을 나타낸 것은 다를 수 없는 事情이었다. 『貸金業者の 若干 이 典當業을 兼營하는 者로 貸金業者は 當然히 典當業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貸金業者が 多數인 것에 比하여 典當業者は 그 數가 적었던』(註2) 것이다.

(註 1) 「同上」210面

(註 2) 「鮮南發達史」392面

이러한 高利貸付業者는 大體 어느 程度로 李朝末期의 社會에 그 뿌리를 박고 있었던가 且雖者로 하여금 말하게 하자.

『京城市內中 特히 泥峴附近(現今의 乙支路를 말 한다)에 이르면 所謂 典當局이란 看板이 매우 많이 눈에 띠일 것이다. 이것이 즉 典當鋪이다』
(註1) 이것은 信夫淳平의 報告이다. 그런데 또

『발을 한번 京城 其他の 都邑에 넣으면 「典當局」 혹은 「典當鋪」等의 看板을 到處에서 散見한다』(註2)

(註 1) 「韓半島」48面

(註 2) 「朝鮮產業誌」21面

右의 二種의 報告에 依하여 當時의 高利貸業者の 勢力의 程度가 알려진다. 이것은 表面에 堂々히 看板을 건 高利貸인데 表面에 나타나지 않은

貸金業이 얼마나 있었던가를 생각하여는 무릇 李朝末期의 腐敗된 社會狀態를 明確하게 判斷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首都에 들어 오는 者로 하여금 먼저 『高利貸』의 看板에 瞳目시키는 現象이야말로 아마 近世經濟史上 高利貸資本의 存在의 醜態를 그렇게도 露骨的으로 明示한 것은 어느 끗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自給自足經濟의 强靭한 網을 다음에서 다음으로 切斷하여가는 外國商品의 輸入 自國農產物을 主로 하는 資源의 輸出 이러한 關聯的作用에 依하여 地方封建地主群의 小生產者에의 収取는 그 速度를 빨리하고 그것과 더불어 內憂外患이 側近에 닥아온 當時 國家財政은 恒常 缺乏을 가져오고 이것의 補足은 結局 農民層의 두 어깨가 지게되고 國家에 納付하는 租稅, 『兩班』層에 바치는 地代의 量은 增加할 따름이었다. 이리하여 小生產業者는 內外人の 高利貸에 依持하는 以外에 命脈을 保全할 方法은 없었던 것이다. 支配的 諸層이 受取하는 貨幣形態에 있어서의 貢納이 高利貸付資本의 第一의 源泉을 形成하고 있던 것인데 지금은 貢納을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는 必要是 不斷히 高利貸付業者の 援助를 求하지 아니치 못하게 하고 이것이 나가서는 高利貸付業者를 增加시키고 擴大的으로 再生產시키는 것이다. 高利貸付資本은 高利貸付業 그 自身에 依하여서도 擴大的으로 再生產된다. 土地所有者에서 換言하면 土地所有者가 受取하는 貢納에서 獨立하여서 擴大的으로 再生產되어 가는 것이다. 當時は 貨幣의 必要가 위의 報告와 같이 『귀찮을 程度』로 高利貸를 必要로 하였다. 勿論 이때의 貨幣는 商品去來의 結果로서 發生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의 支拂을 위한 手段이었다. 또 貨幣에 對한 需要가 商品流通에 依하여서가 아니고 喚起된 것이다. 즉 貨幣는 貢賦等을 위하여서 必要하였던 것이 主要因인 것이다. 貨幣流通은 商品流通의 다른 一面에 不過한데 이 報遇는 商品流過에서는 隔離되어 一方的運動으로 되어 있었다. 이 貨幣의 一方的 運動이야말로 高利貸付業者를 造出시키고 또 高利貸付資本에 依하여서 培養되어 가는 것이다. 高利貸付業은 이와 같은 生產手段의 分散된 끗에 있어서 生產樣式을 變化시키지 않고 再生產을 더욱 더욱 悲慘하게 할 따름이었다. 이어서 韓末의 高利貸金業者 特히 表面에

나타난『典當業者』의 數量 보기로 하자.

『隆熙 4年(西紀1909年)의 調査에 依하면 京畿의 152를 最多로하고 大概 1道 450에서 230에 不過하고 咸鏡南道는 겨우 3을 가지는 것을 最多로 하고 江原道에는 1戶도 없었다.』(註)

(註) 「朝鮮風俗集」275面

「居留民之昔物語」193面

이 報告는 貸金業을 兼한『典當業』의 것인데 이 以外에 貸金業者를 添加하면 아마 驚異的 數字가 될 것이다. 서울에 있어서 目擊한 信夫氏는日本人의 典當業者는 40戶內外이고 어느것이나 韓人을 相對로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當時의 利子도 日本人相互間이 最低이고 最高는 日本人이 韓國人에 代付한 利子이었던 것을 記錄하고 있는데, 極히 當然한 것일 것이다.

職業的 高利貸資本家의 出身은 如何한 者이든지 그들은 그들의 機能을 獨立化하고 그리고 그들의 大概는 많지 않은 資本으로써 純然한 貸金業으로서 或은『典當業』으로서 或은 表面上 또는 裏面에 있어서 貸金業을 兼한『典當業』으로서 高利貸를 한 것이었다.

結論

李朝末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은 支配的인 資本形態가 現物形態이든 貨幣形態이든 간에 또는 公債이든 私債이든 간에 歷史를 새롭히 創造하려는 因素는 아니고, 土地를 中心으로 하고 自給自足的 自然經濟를 地盤으로 하는 單純商品生產의 幼稚한에 照應한 바의 副次的인 収取形態로 또는 封建支配層의 副業的 収取形態 또는 一聯의 高利貸付業者에의 財產集中으로서 李朝社會의 生活樣式을 조금이라도 變化시킴이 없이 오히려 強靭한 寄生蟲으로서 그 生產樣式에 強하게 附着하고 그리고 이것을 裂弱시켰다. 그것은 生產樣式의 養分을 無慈悲하게 吸收하여 버리며 그 氣力を 減少시켜 李朝封建社會의 再生臺이 더욱 더욱 慘憺한 諸條件下에서 이 뿐이지 않게 하였다. 實로 高利貸付資本이 던진 波紋은 이 資本 그 自身에

依하여 定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生產諸力의 發展의 程度 即 所與된 歷史的事實에 있어서 이 資本과 結合하여 作用하는 다른 여려가지의 要因에 依存하는 바가 커졌다. 이리하여 李朝末期의 高利貸付資本은 李朝封建社會의 毛細管을 完全히 封鎖하고 歷史的運命을 委縮시키는 것이었다.

以上 各章에서 分析한 것으로부터 이 李朝末期에 있어서의 高利貸付資本이 舊來한 三箇의 結果를 歸納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째로 高利貸는 많은 封建的土地所有者的 部分的活動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勿論 이려한 封建地主群이 副業의 高利貸以外에 이미 본 바와 같이 韓末에 이르러 外國資本의 浸潤과 더불어 輸入된 職業的 專業的 特殊의 高利貸付資本家의 一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西洋諸國에서 보는 것과 같은 高利貸付資本家의 統一的 層은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 分明하다. 왜냐하면 그려한 專業者의 高利貸群은 副業으로서의 그것보다도 全高利貸層의 僅少한 部分을 이루고 있었음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表面에 明確하게 나타난 高利貸는 潛在的 高利貸보다도 薄弱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李朝封建社會의 進展에 따라서 高利貸金의 運營으로 相當한 財產의 蓄積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특히 韓末에 있어서는 外國人の手中에 顯著한 財產의 蓄積이 進行되고 있던 것은 事實이었다. 그러나 注意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李朝封建社會의 崩壞를 促進하기는 하였지만, 近代發展의 契機인 自釀的 要因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 關한限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舊來의 朝鮮社會의 歷史에 있어서는——東洋一般에 對하여 그려하겠지만——훨씬 높은 段階에 있어서 保存된다고 하는 契機가, 滅棄되는 契機보다도 커졌다. 따라서 初期資本主義의 發生의 契機도 비록 自釀的인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遲滯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이려한 蓄積은 歪曲된 初期資本主義에 있어서도 必然的 으로 그一部의 層의 利益으로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第三으로 他處와 마찬가지로 高利貸資本이 미친 作用에 關한 一般的 確認 즉 高利貸는 그것만으로서는 生產方法을 變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哲신 彫刻的으로 實證되었다. 勿論 高利貸資本은 寄生蟲으로서 그것에 吸着하고 그 生產方法을 一層 悲慘하게 한 것은 李朝末期의 社會經濟史를 보는 者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것이다.

高利貸는 이리하여 窮乏化의 過程을 오로지 最後까지 引導하여 갈 따름이었다. 高利貸가 이 過程을 招來시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이 過程이 다른 勢力으로 말미암아 造成된 다음에 단지 그것을 利用 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問題는 實로 이곳에 存在하는 것이다.

— 끝 —